

답변서



사 건 2018재나183 기타(금전)

원 고 임그루

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재심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

- 1.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재심청구원인에 대한 답변

- 1.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모두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06. 04

피고 케이티 노동조합

대표자 위원장 김해관



10892



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귀중